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06 발의연월일: 2023. 4. 3.

발 의 자:최형두·권명호·김예지

강기윤・서범수・구자근

지성호 · 김석기 · 이달곤

정동만 · 김성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 (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임.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고 싶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임.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 또는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그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분류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투기 목적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 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1주택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택의 공시가 액이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관계인구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구의 유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 1) 수도권지역
 -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일 것

제9조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구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 ③ (생	제8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1주택과 다음 각 목의 요건</u>
	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택
	의 공시가액이 취득 당시 3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관
	계인구주택"이라 한다)을 함
	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구의 유입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
	<u></u> 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⑤ (생략)

-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⑥ (생 략)
 -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 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 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⑧ · ⑨ (생 략)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
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체류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주택일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⑥
(현행과 같음)
7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구주택분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

8 · 9 (현행과 같음)